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2회 임시회(2019. 7. 23.)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의회 운영위원회

전문위원 신준호

**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19-97
----------	-------

2019. 7. 23.
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안 자 : 권영숙 의원 외 3인
- 나. 제 안 일 : 2019. 7. 17.
- 다. 회 부 일 : 2019. 7. 18.

2. 제안이유

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, 감정인 및 참고인이 출석할 때 그 비용을 지급할 기준과 예외 대상자 등을 알기 쉽게 규정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법령 내용에 맞게 고유어나 쉬운 말로 바꾸어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비용지급의 예외 대상자 신설(안 제3조)
- 나. 비용의 지급기준을 알기 쉽게 규정(안 제4조)
- 다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및 표현 정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배경

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4조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“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, 비용 지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 예외 대상자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명확한 표현을 위하여 “또는”과 “ 및”을 함께 쓴 규정을 주체 범위가 혼동되지 않도록 “또는”을 삭제하여 바꾸어 규정(안 제1조)
- 일본어투 표현인 “~에 의하여”를 “~에 따라”로 바꾸어 규정(안 제1조~안 제2조)
- 비용 지급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 대상자 신설(안 제3조)
- 비용의 지급 기준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」 제6조를 준용(안 제4조)
- 한자어투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규정(안 제5조)

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증인 등 비용지급에 대하여 재정비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증인 등 대상자의 비용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3조에 그 밖에 소속 단체에서 따로 비용을 받는 사람을 예외로 규정하고 조례 구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용의 지급 기준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는 등,

-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
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등 적법하게
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[관 계 법령]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44조(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)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·진술하는 증인·참고인이 방송·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·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지방의회에서 증언·진술한 증인·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.

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.